

2026년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2026년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개요

항목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			
출자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 7,200억원 이내* * 정부재정(재정모펀드) 1,200억원 이내,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 이내, 지정출자자(사모투자재간접공모펀드) 5,700억원 이내 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펀드별 출자금액</th> <th>선정 펀드 수</th> <th>출자총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 형</td> <td>400억원 이상</td> <td>4개 이상</td> <td>1,600억원 이상</td> </tr> <tr> <td>중 형</td> <td>800억원 이내</td> <td>4개 내외</td> <td>3,200억원 내외</td> </tr> <tr> <td>대 형</td> <td>1,200억원 이내</td> <td>2개 이내</td> <td>2,400억원 이내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합 계</td> <td>7,200억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펀드별 출자금액	선정 펀드 수	출자총액	소 형	400억원 이상	4개 이상	1,600억원 이상	중 형	800억원 이내	4개 내외	3,200억원 내외	대 형	1,200억원 이내	2개 이내	2,400억원 이내	합 계			7,200억원 이내
	구 분	펀드별 출자금액	선정 펀드 수	출자총액																	
	소 형	400억원 이상	4개 이상	1,600억원 이상																	
	중 형	800억원 이내	4개 내외	3,200억원 내외																	
대 형	1,200억원 이내	2개 이내	2,400억원 이내																		
합 계			7,200억원 이내																		
<p>※ 단, 지정출자자의 출자금액이 당초 목표금액(5,700억원)에 미달하는 경우, 정부재정 및 첨단기금의 출자금액이 동일한 비율로 축소될 수 있음</p>																					
선 정 펀 드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개 내외* * 제안사는 상기 출자계획에 따른 소형, 중형, 대형 지망 순위를 제안하여야 하며, 심사 결과, 지망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(선정 결과 대형 제안사가 중형 또는 소형으로, 중형 제안사가 소형으로 배정될 수 있음) * 인프라펀드 제안은 대형에 한함 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※ 공고일 시점의 현행 법규에 따른 적법·유효한 투자기구일 것을 요함 																				
운 용 사 지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운용사의 경우 지원 가능 ① 제안서 접수일 현재 상기 「투자기구」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설정과 업무 집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운용사 ② 금융투자협회공시 기준 평가기준일(25.12.31.) 현재 주식, 혼합주식, 혼합채권, 혼합자산 합산금액^{주1)}이 1,000억원 이상^{주2)} 주1)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(http://freesis.kofia.or.kr) > 펀드 > 회사별설정규모 > 기준일 선택(25.12.31.) 펀드(투자일임 제외) > 순자산총액, 투자지역(국내), 펀드종류(전체), 공/사모구분(전체), 기금 전체(예) 주2) 선정계획 공고 - 2. 투자대상의 주목적 투자 및 의무투자비율 - ②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를 주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평가기준일(25.12.31.) 현재 특별자산(인프라에 한함) 순자산총액이 5,000억원 이상 ※ 금융투자협회 공시 또는 사무수탁기관 등을 통하여 객관적 성과 검증이 가능한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 ○ 2개 이상 운용사 공동 운용 불가 																				
운 용 사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 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* 한국성장금융: www.kgrowth.or.kr(출자사업공고) 																				

접수일시	○ 2026년 4월 17일(금) 10:00 ~ 16:00 ※ 주목적 투자대상, 출자조건 등 공고조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성장금융 앞 사전 연락을 통해 문의
심사결과 발표	○ 2026년 5월중(예정)
펀드 설정시한	○ 지정출자자가 출자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-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※ 선정 후 출자자 및 운용사간 협의 과정에서 설정시한은 단축될 수 있음

2. 투자대상

-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, 설정일로부터 투자기간(30개월)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

- 아래 주목적 투자대상 ①, ② 중 택하여 의무투자비율 달성

- ①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영위기업^{주1)} 中 첨단전략산업기업^{주2)} 및 첨단전략산업관련 기업^{주2)}(이하 "첨단전략산업기업 등")에 펀드 최초설정금액의 60% 이상 투자

- 신규자금^{주3)}으로 아래 ㉠, ㉡를 모두 포함하여 최초설정금액의 30% 이상 투자

㉠ 비상장사인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펀드 최초설정금액의 10% 이상 투자

㉡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(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)^{주4)}인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펀드 최초 설정금액의 10% 이상 투자

-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펀드 최초설정금액의 30% 이내 투자(단,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투자는 10% 이내 범위에서 허용)

주1)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은 별첨자료 참조(단, 별첨자료는 혁신성장공동기준(6차)를 바탕으로 한 예시이며, 실제 주목적 투자대상 판별은 '26.2분기 중 개정 예정인 혁신성장공동기준(7차)로 판별예정)

주2)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을 의미

주3)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메자닌(CB, BW, EB) 등 기업에 신규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의미

주4) 기술특례상장사 전체 규모 등 고려시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컨소시엄이 판단하는 경우 펀드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신규상장사 등으로 확대 가능

※ 코스닥벤처펀드 형태도 제안 가능

- ②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펀드 최초설정금액의 60% 이상 대출 또는 투자

※ 필요 시 주목적 투자 실적에 관한 검증을 시행할 수 있음

※ 상장주식의 경우,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 종목, 불공정매매, 시세조종 등 문제의 소지 또는 우려가 있는 종목은 운용대상에서 제외

※ 위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 외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3. 주요 출자조건

항 목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목 표 설정금액	○ 소형 400억원 이상, 중형 800억원 내외, 대형 1,200억원 내외* * 정부재정(재정모펀드), 첨단전략산업기금, 지정출자자(사모투자재간접공모펀드), 운용사 출자금으로 구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 용 사 출자비율	○ 목표 설정금액의 1% 이상(후순위 출자*) * 하단 '손익배분 구조'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존속기간	○ 펀드 설정일로부터 58개월 이내(1개월 이내 연장 가능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투자기간	○ (상장주식 외) 펀드 설정일로부터 30개월 이내, (상장주식) 펀드 설정일로부터 57개월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용제한	○ 파생상품(헤지 목적의 주가지수선물 투자 등은 제한적 허용), 해외투자, 기타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컨소시엄*이 정하는 사항 * 미래에셋자산운용, 삼성자산운용, 케이비자산운용, 한국산업은행, 한국성장금융 5개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자자별 출자금액 (예 시)	○ 출자자별 출자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표 설정금액을 구분 (단위: 억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출자자</th> <th>소형</th> <th>중형</th> <th>대형</th> <th>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선순위</td> <td>지정출자자</td> <td>316.67</td> <td>633.33</td> <td>950.00</td> <td>78.38%</td> </tr> <tr> <td>첨단전략산업기금</td> <td>16.67</td> <td>33.33</td> <td>50.00</td> <td>4.13%</td> </tr> <tr> <td>후순위</td> <td>정부재정</td> <td>66.67</td> <td>133.33</td> <td>200.00</td> <td>16.50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소 계</td> <td>400.00</td> <td>800.00</td> <td>1,200.00</td> <td>99.00%</td> </tr> <tr> <td>후순위</td> <td>운용사</td> <td>4.04</td> <td>8.08</td> <td>12.12</td> <td>1.00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합 계</td> <td>404.04</td> <td>808.08</td> <td>1,212.12</td> <td>100.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지정출자자의 출자금액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, 정부 재정 출자금액 및 펀드설정금액을 지정출자자의 목표금액 대비 출자금액, 비율로 하향 조정 가능</p>	구 분	출자자	소형	중형	대형	비율	선순위	지정출자자	316.67	633.33	950.00	78.38%	첨단전략산업기금	16.67	33.33	50.00	4.13%	후순위	정부재정	66.67	133.33	200.00	16.50%	소 계		400.00	800.00	1,200.00	99.00%	후순위	운용사	4.04	8.08	12.12	1.00%	합 계		404.04	808.08	1,212.12	100.00%
구 분	출자자	소형	중형	대형	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순위	지정출자자	316.67	633.33	950.00	78.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첨단전략산업기금	16.67	33.33	50.00	4.1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후순위	정부재정	66.67	133.33	200.00	16.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 계		400.00	800.00	1,200.00	99.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후순위	운용사	4.04	8.08	12.12	1.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404.04	808.08	1,212.12	100.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납입방식	○ 일시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보 수	○ 연평균 NAV 0.6% 내외에서 자율 제안(판매, 운용보수, 사무관리, 신탁보수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손익배분 구 조	○ 선순위·후순위 출자구조에 따라 이익·손실을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배분 순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 익</td> <td>○ 선순위 원금 → 후순위 원금 → 선순위 수익(기준수익까지) → 후순위 수익(기준수익까지) → 초과수익 안분(선순위 6 : 후순위 4) * 기준수익: 멀티플[(회수총액/출자총액)-1] = 30% ** 순위 내 초과수익 안분 비율: 선순위는 출자비율에 따라 후순위는 재정 7 : 운용사 3의 비율로 안분함</td> </tr> <tr> <td>손 실</td> <td>○ 후순위 원금 → 선순위 원금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배분 순서	이 익	○ 선순위 원금 → 후순위 원금 → 선순위 수익(기준수익까지) → 후순위 수익(기준수익까지) → 초과수익 안분(선순위 6 : 후순위 4) * 기준수익: 멀티플[(회수총액/출자총액)-1] = 30% ** 순위 내 초과수익 안분 비율: 선순위는 출자비율에 따라 후순위는 재정 7 : 운용사 3의 비율로 안분함	손 실	○ 후순위 원금 → 선순위 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배분 순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 익	○ 선순위 원금 → 후순위 원금 → 선순위 수익(기준수익까지) → 후순위 수익(기준수익까지) → 초과수익 안분(선순위 6 : 후순위 4) * 기준수익: 멀티플[(회수총액/출자총액)-1] = 30% ** 순위 내 초과수익 안분 비율: 선순위는 출자비율에 따라 후순위는 재정 7 : 운용사 3의 비율로 안분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손 실	○ 후순위 원금 → 선순위 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 용 사 추 가 인센티브 (주목적 투자 대상 ① 限)	○ 신규자금 투자, 지방투자 일정 수준 이상 달성시 재정모펀드 초과수익을 활용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 - 추가 인센티브는 기준수익 초과 달성 전제로 지급 가능하며, 후순위 내 재정과 운용사 간 안분 비율 조정을 통해 지급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인센티브 지급기준</th> <th>조정 전</th> <th>조정 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신규자금 투자 달성</td> <td>최초설정금액 40% 이상</td> <td>재정 7 : 운용사 3</td> <td>재정 6 : 운용사 4</td> </tr> <tr> <td>② 지방투자 달성</td> <td>최초설정금액 40% 이상</td> <td>재정 7 : 운용사 3</td> <td>재정 6 : 운용사 4</td> </tr> <tr> <td>③ 신규자금&지방투자 달성</td> <td>①, ② 모두 충족시</td> <td>재정 7 : 운용사 3</td> <td>재정 5 : 운용사 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인센티브 지급기준	조정 전	조정 후	① 신규자금 투자 달성	최초설정금액 40% 이상	재정 7 : 운용사 3	재정 6 : 운용사 4	② 지방투자 달성	최초설정금액 40% 이상	재정 7 : 운용사 3	재정 6 : 운용사 4	③ 신규자금&지방투자 달성	①, ② 모두 충족시	재정 7 : 운용사 3	재정 5 : 운용사 5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인센티브 지급기준	조정 전	조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신규자금 투자 달성	최초설정금액 40% 이상	재정 7 : 운용사 3	재정 6 : 운용사 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지방투자 달성	최초설정금액 40% 이상	재정 7 : 운용사 3	재정 6 : 운용사 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신규자금&지방투자 달성	①, ② 모두 충족시	재정 7 : 운용사 3	재정 5 : 운용사 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항 목	주요 내용
운용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핵심운용인력 총 2인 이상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, 운용인력 경력,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○ 자격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핵심운용인력의 인별 투자경력 4년 이상 * 투자경력: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 가능하여야 함 ○ 펀드 설정 시 핵심운용인력은 신탁계약에 기재
출 자 자 제 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(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펀드 포함) 및 법인으로 제한
수탁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○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사무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
판 매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
회계감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
펀 드 전자보고 시 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 운용 등에 대하여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컨소시엄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○ 첨단전략산업 등 투자실적에 대한 제출 의무 부여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설정금액, 보수 등)은 선정 후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○ 지정출자자인 공모펀드 운용사가 제안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는 경우 보수 하향조정 가능 ○ 펀드의 직접 차입 행위는 금지됨 ○ 설정 과정에서 보수구조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, 펀드 조성 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○ 선정시 운용사가 제안한 중점투자분야를 고려하여 심사 ○ 운용사 출자비율(목표설정금액의 1% 이상)을 초과하여 출자를 제안할 경우 심사시 가점 부여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한국 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

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(미해소),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 - 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주의
 - 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제외한 펀드 운용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경고·시정명령·업무정지
- ※ 다만,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,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(직원인 경우) 또는 문책경고(임원인 경우)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신탁 계약서 등 펀드 관련 계약을 포함, 이하 동일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설정일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 시,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

5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- 설정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) 내 펀드설정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설정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설정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신탁계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청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할 수 있으며, 기 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된 펀드 중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-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, 감독당국 제재내역, 위탁운용사의 경영 및 펀드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 등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- 선정된 운용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신탁계약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, 고의적·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
□ 기타
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**2025.12.31.**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6. 선정절차 및 일정

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제안(구술)심사 → 최종선정

선정 일정

일정	내 용	비 고
'26. 4.17.(금)	제안서 접수	10:00~16:00
'26. 5월중(예정)	최종 선정	개별 통지

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7. 지원방법

지원방법

-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대면 제출*
 - *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(관련 양식은 별도 공지 예정)
- 제안(구술)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 자료를 제출

8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- 접수처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 SK증권빌딩 11층)
- 문의방법: 한국성장금융 성장금융2팀 (02-2090-9164)
E-mail: shk@kgrowth.or.kr

2026년 4월 10일

미 래 에 셋 자 산 운 용
삼 성 자 산 운 용
케 이 비 자 산 운 용
한 국 산 업 은 행
한 국 성 장 금 융 투 자 운 용